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00

발의연월일: 2025. 3. 6.

발 의 자:이용우·이원택·박홍배

전진숙 · 정혜경 · 김태선

박용갑 • 김우영 • 이학영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등의 경우는 합의부 심판대상에 예외로두고 있음.

그러나 인명 피해가 크고 법률·사실관계 관련 쟁점이 많은 중대재해 사건의 특성상 중요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법률 제 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아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의부의 심판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				
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				
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3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				
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u><</u> 삭 제>			
한 법률」 제6조제1항・제				
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				
당하는 사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